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99

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정우택·정찬민·하영제

백종헌 • 구자근 • 배준영

최승재 · 김영식 · 지성호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특히 전체 면허소지 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 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.

그러나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주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10년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기관과는 달리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이나, 최근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들의 건강상태 향상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능력 역시 향상된 것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,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·배부·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,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,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제7조의2, 제7조의3 신설 및 제87조제1항제1호·제2호).

법률 제 호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고령운전자 표지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(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"고령운전자 표지"라 한다)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

-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.
- 제7조의3(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운전)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.

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65세"를 각각 "70세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하여는 제87조제1항1호 ·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7조의2(고령운전자 표지) ①국
	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
	운전자(운전면허증을 받은 사
	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
	한다. 이하 같다)의 안전운전
	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
	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
	차임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
	"고령운전자 표지"라 한다)를
	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
	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
	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
	차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
	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의3(고령운전자에 대한 주
	의운전)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
	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
	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
	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
	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
	양보하는 등 주의하여 운전하

어아 하다

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)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.

- 1.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(운전면 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 5세 미만인 사람은 5년,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,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2.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(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

<u>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
세87조(운전면허증의	갱신과 정
기 적성검사) ①	
1	
	-70세
2	
70세	
<del></del>	

은 5년,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,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② ~ ④ (생 략)

_
② ~ ④ (현행과 같음)